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3235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0091	강유정의원 등 10인	’24.6.3.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9.16.)
	2200698	김승수의원 등 11인	’24.6.20.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9.16.)
	2210525	정부	’25.5.15.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9.1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9.18.)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제95조).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제66조제1항 본문 중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를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기준 및 절차에”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제9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4조제2호 및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신 설>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 ----------

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⑥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기준 및 절차에 ----------.
<신 설>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제94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
<신 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